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자체별 보조금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등〉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48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자체별 보조금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등(안 제84조의2 신설)	2
2.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화(안 제85조제4 항 신설)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3. 25.

다. 회 부 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재정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가 결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자체별 보조금명세서 작성 및 제출 등(안 제8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조금 관리의 특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보조금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이하 ‘보조금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보조금 명세서를 종합하여 총괄보조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정부는 총괄보조금명세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현행 「국가재정법」¹⁾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이에 더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보조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작성

1) 「국가재정법」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 다음연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본예산 기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7조 4,390억원으로, 이러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舊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2021년 6조 6,000억원에서 2024년 10조 2,460억원으로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2021년에 비해 국고보조금 규모가 높은 상황임.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국고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은 2025년 본예산 기준 7조 540억원으로, 지특회계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의 약 95%에 해당하며, 매년 약 95%의 지특회계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십억원)

연도	총액	지자체 교부		민간 교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1	6,600	6,259	94.8	338	5.1
2022	7,089	6,716	94.7	373	5.3
2023	9,611	9,314	96.9	296	3.1
2024	10,246	9,759	95.2	486	4.7
2025	7,439	7,054	94.8	378	5.1

주: 각 연도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처럼 지특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라 부처별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부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이나 회계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실제 보조금통합포털인 e-나라도움에서도 보조금에 대하여 중앙관서별 및 16대 분야별 보조금 현황만 나타나고 있을 뿐 지특회계의 보조금 규모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집행 현황 등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특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특회계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 실적 등을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교부실적 뿐만 아니라 집행실적도 보조금명세서에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는 보조금 실적에 교부실적뿐만 아니라 집행실적까지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고보조금의 교부 규모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되는 실적까지도 함께 파악하여 국고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²⁾은 보조금 집행실적의 경우 이미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집행실적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역시 지특회계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의 지자체별 규모와 집행 현황 등을 파악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각 부처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조금명세서와 기획재정부가 종합하여 작성하는 총괄보조금명세서에 국고보조금 교부실적뿐만 아니라 집행실적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특회계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10조 2,460만원 중 집행액은 8조 7,530억원으로 그 집행률이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지특회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십억원, %)

연도	총액			지자체 교부			민간 교부		
	교부	집행	집행률	교부	집행	집행률	교부	집행	집행률
2021	6,600	5,278	80.0	6,259	4,962	79.3	338	307	90.8
2022	7,089	5,511	77.7	6,716	5,140	76.5	373	369	98.9
2023	9,611	7,735	80.5	9,314	7,428	79.8	296	298	100.7
2024	10,246	8,753	85.4	9,759	8,263	84.7	486	473	97.3
2025.6.	7,439	2,931	39.4	7,054	2,668	37.8	378	142	37.6

주: 각 연도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지자체별 보조금 교부 내역 공개 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국가재정법」에 보조금의 교부·집행 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 신설의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그러나 지역간 갈등 유발을 피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보조금 교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별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지역간 갈등 소지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논의 방향일 것임.

특히, 현행과 같이 지자체별 보조금 교부 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 재량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지역별 교부금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배분 기준 및 규모, 배분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

부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국가재정법」에서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부처별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회계별·계정별로 세분화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유사한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³⁾」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동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의안번호 제2209347호,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4조의2(보조금 관리의 특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이하 “보조금명세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조금명세서를 종합하여 총괄보조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5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화(안 제 85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신 설>	○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 (현행과 같음) -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현행법⁴⁾은 지특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지원규모나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지자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활성화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공개함으로써 성과평가 및 지특회계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⁵⁾.

다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현행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는 실시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성과 평가 실시를 위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나 관계부처 협의 등 제반 조건들을 조속히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5)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157